

特許의 國際化動向과 우리나라에서의 特許現況

李 紘 漱

< KORSTIC 第二技術情報部長 >

1. 머리말

1624年 英國議會에서 制定된 專賣條例 (Statute of Monopolies)는 近代特許制度의 發生端緒가 되어 오늘날 英國 特許法의 基礎를 이루었으며, 이를 모방하여 各國에서 自國의 產業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特許制度를 確立하기에 이르러 오늘까지 持續되고 있다.

特許制度가 存在하는 根本的인 理由는 새로운 技術을 社會에 公表하는 代償 (Reward)으로 獨點權 (monopoly)을 부여하여 그 技術을 保護하여, 社會全体의 技術水準을 向上시키는데 있다. 즉 特許制度는 人間의 創造力を 刺戟하는 制度다. 美國商務省 (前特許廳廳舍)의 正門에 링컨大統領의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 즉, “特許制度는 天才라는 불꽃에 興味라고 하는 燃料를 添加한 것이다 (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라고 쓰여져 있다. 우리나라의 特許法 第一條(目的)에도 “이 法은 發明을 奬勵 保護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步發展을 圖謀하고, 國家產業의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現在 社會에서의 特許制度는 發明者個人의 創造力を 자극한다는 機能보다도, 發明의 公開와 대신해서 排他的 獨占權을 부여한다는 機能, 다시 말하면 技術支配의 手段으로서의 機能의 比重이 훨씬 높아가고 있다. 즉 한층 스케일이 큰 企業의 獨占權으로 發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지난날의 特許가 個人的 獨創

的인 着想에 優先權을 認定하고 그 着想에 의한 利益을 응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特許에 있어서는 大企業에서의 技術支配手段으로 變質된 裏面에는 技術의 進步가 高度로 發展되었고, 이와 아울러 하나의 技術革新을 위한 研究開發의 投資도 방대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特許制度가 한 나라의 產業發展을 目的으로 한 것이 國際交易이 빈번해짐에 따라 한 나라의 產業發展에서 한층 次元을 높여 國際的인 保護가 要求되기에 이르렀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特許의 國際化動向을 여러 條約과 國際機構를 살펴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特許가 어떻게 이에 對應할 것인가에 대해 要約해서 記述하고자 한다.

2. 여려 國際條約 및 國際機構

2.1 万国工業所有權 保護同盟條約 (Convention de Par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一名 파리條約)

원래 特許制度란 有體物이 아닌 思想이나 觀念을 權利化한 無形의 財產權이므로 國際間의 交流와 通商關係가 긴밀해짐에 따라, 한 나라의 領域內에서만 保護하기에는 不充分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制度自體가 共通的인 理念과 節次로 되어 있고 彼此의 利害가 함께 介在하기 때문에 國際間의 統一的 規制를 맺기 쉬운 特質을 갖고 있다. 이러한 特許制度의 國際的 保護의 必要性과 共通性으로 인해 一般的인 國際條

約을 制定하기 위한 움직임이 19세기 中葉부터 爽트기 시작하여, 그 結果로 탄생한 것이 1883年 巴黎에서 체결된 이른바 巴黎同盟條約(파리條約, Paris Convention)이다.

이 條約은 產業的인 國際同盟이므로 當初에는 14個國으로 시작한 것이 그後 많은 發展을 거듭하여 現在는 88個國이 加盟하게 되었으며, 많은 國際條約과 國際機構를 派生시켰다.

이 巴黎條約은 工業所有權의 國際的 保護를 推進하여, 이에 따라 國際間의 通商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을 目的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各國의 特許法을 대신한 統一된 特許法, 즉 國際特許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條約에서는 各 同盟國사이에 이 조약의 規定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相互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特別한 協定을 맺을 수 있도록 한 限定協定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이 條約의 規定을 概觀하면 商標關係의 規定은 비교적 詳細하지만 特許, 實用新案 및 意匠에 관한 規定은 貧弱함을 알 수 있다. 그 理由는 特許나 實用新案의 法制는 한 나라의 產業政策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므로 從來 各國의 利害의 一致를 보기 힘든 것과 各國이 條約을 맺기 以前부터 갖고 있는 傳統的인 法制때문이다. 예를 들면 美國과 같은 審查主義國家들과 벨기에와 같은 無審查主義國家들과의 사이에 각기 制度面에서相當한 격차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 類型의 國家들을 쉽게 接近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또 하나의 意見一致의 阻害要因은 이 條約을 改正하기 위해서는 체결된 同盟國間의 意見이 全體의 賛成을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現在 巴黎條約에서 規定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內容 몇 가지를 들면, 다음 3가지다.

① 內外國人 平等의 原則

이것은 쉽게 말해서 條約에 加盟한 나라의 國民은 다른 加盟國에서도 特許를 取得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內國民에게 要求되는 條件 및 手續을 준수하면 다른 同盟國의 國民(外國人)도 서로 다른 同盟國에서 特許 등의 工業所有權을 取得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日本도 美國도 다같이 이 條約의 同盟

國이므로 美國市民은 日本에서 日本國民은 美國에서 同一한 條件으로 工業所有權을 取得할 수 있다.

또한 非同盟國의 國民이라도 同盟國에 住所나 营業所가 있으면 同盟國의 國民과 平等한 資格으로 特許를 取得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를 아직 巴黎條約에 加盟하지 않은 非同盟國이므로 우리나라 國籍을 所持하고 있는 在日同胞는 同盟國인 日本에서 (1974年 1月 1日 以前 우리나라와 日本과의 韓日工業所有權協定이 發效되지 않았을 때에도) 特許를 取得할 수가 있었다.

② 特許獨立의 原則

이것은 같은 發明을 A國과 B國에 出願하였을 경우, A國에서 特許를 取得하였다고 해서 B國에서도 特許를 當然히 取得할 수 있다거나, 反對로 A國에서 拒絕되었다고 해서 B國에서도 拒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特許獨立의 原則은 同一한 發明이 여러 나라에서 特許權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權利는 서로 獨立된 것이며, 하등의 附隨性이나 因果關係가 없는 獨立性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앞에서와 같은 생각은 判斷하는 側에서의 心證을 形成하는 側에는 有利하게 作用될지 몰라도 實際의 法理論的인 面에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이 原則은 巴黎條約인 統一國際法으로서의 性格을 지닌 것이 아니므로 各國의 領域에 限해서만 效力を 가질 뿐 他國의 領域까지는 못미치는 屬地主義에 따르는 당연한 歸結이라 할 수 있다. 마치 通貨의 效力이 그 나라에서만 通用되는 것과 같다.

③ 優先權과 優先權主張

이 條約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優先權(Priority)을 인정하는 일이다. 優先權이라 함은 發明, 考案, 意匠, 商標 등의 工業所有權에 관해서 同盟한 어떤 한 나라에 最初로 出願한 것을 基礎로 하여 그것과 同一한 內容의 出願을一定한 期間內에 다른 同盟國에 出願할 경우 一定한 利益, 즉 出願의 先後에 관한 관계, 新規性의 判斷時點에 관한 利益 등이 賦與되도록 出願인이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이 때의 請求를 優先權主張(Claim of convention prior-

rity)이라고 한다.

이 規定이 마련된 취지는 本國에 出願한 工業所有權을 同時에 여러 外國에 出願하려면, 地理的問題 또는 言語 및 制度上에서의 相違때문에 同時出願이 不可能하며, 出願手續에 많은 時間과 費用이 들므로 쉽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條約에 加盟한 同盟國間에相互外國에서의 工業所有權取得을 쉽게 함으로써 國際間의 通商去來의 圓滑과 萬全을 期하고자 이러한 優先權制度를 마련한 것이다.

實際로 日本의 A라는 出願인이 自國에 出願하고 同盟外國인 美國, 英國, 獨逸 등 여러 나라에 同時出願을 하고자 할 때는, 각 對象國에 優先權을 主張하여 日本에 出願한 出願日로부터 12個月以內에 出願하면 當初 日本에 出願한 出願日로 認定하여 各國이 受理한다. 그러나 이때의 外國出願에 있어서는 各國의 言語와 制度에 맞춰서 出願하여야 한다.

最近 第1回 파리條約改正政府專門家會議가 1975年 2月에 開催되었는데 이 會議에서는 今後内外國民同等, 特許의 獨立, 優先權認定, 特許發明의 不實施와 強制實施, 全會員一致의 原則 등 파리條約의 基本原則을 尊重함과 아울러 發展途上國의 事情을 고려한 非相互的 特惠措置, 技術援助, 製法特許 保護의 範圍 등에 대해서도 檢討하여 파리條約을 改正할 것을 決議를 보았다.

2.2 世界知的所有權機構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 I. P. O.)

1967年 7月 스톡홀름知的所有權會議에서 새로 設立된 工業所有權(파리同盟)과 著作權(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一名 베른條約)의 兩分野에 共通되는 國際機構다. 다만, 이 機構의 設立條約은 아직 發效치 않은 채로 되어 있다. 知的所有權分野의 國際機構를近代化시킴과 아울러 파리 및 베른條約의 兩同盟에 加盟하지 않은 나라에도 討論의 場을 마련해서 世界的으로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促進함을 目的으로 設立되었다.

파리 및 베른同盟의 管理業務를 引受하고, 新

條約이나 協定 등의 締結을 奨勵하고 情報, 研究의 收集 및 頒布와 發展途上國에 대한 法律의 技術的 援助를 하는 것 등을 그 任務로 하고 있다. 이 WIPO에 加盟할 수 있는 나라는 파리同盟이나 베른同盟에 加盟된 나라는 물론이고, 그밖의 非同盟國이더라도 UN會員國이거나 UN의 專門機關, 國際原子力機關 또는 國際司法裁判所規定의 加盟國들도 加盟할 수 있는 폭넓은 포용을 하고 있다. 특히 1974年的 UN總會에서는 WIPO를 14번째의 UN特別機構로 昇格시켰고, 現在도 UN總會의 委囑을 받아 “發展途上國에의 技術移轉에 있어서 特許制度의 役割”이란 主題에 대해 研究 檢討하였고, 이것을 基礎로 하여 經濟的, 商業的, 開發的 觀點에서의 파리條約改正의 檢討에도 着手하고 있다.

2.3 特許協力協定(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PCT는 1966年 제네바의 파리同盟事務局(BI-RPI)에서 개최된 同盟執行委員會가 美國의 提案에 의해 파리條約의 範圍內에서 國際協力의 한 方案으로 檢討할 것을 提案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後 美國의 熱意있는 推進으로 1970年 6月 워싱톤에서 개최된 外交會議에서 結論을 얻어 美國을 비롯하여 英國, 西獨, 日本 등 20個國이 이 協定에 調印하였으나 소련 및 프랑스가 이 協定에 調印하지 않았었다. 그後 1975年에는 美國, 76年에는 西獨이 이 條約을 批准했고, 76年에 소련이 調印하고, 77年에 日本과 英國이 批准함으로써 드디어 1978年 1月 24일에 이 條約이 發効되기에 아르렀으며, 가까운 日本에서는 78年 10月 1일을 期해서 PCT에 의한 特許出願을 接受하기 시작했다. 1966年에 提案이 있은 以來 1978年에 發效되기 까지에는 실로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要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파리條約以來 世界의 特許制度에 加해진 一大變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CT發效當時인 1月 24일 現在의 PCT批准國은 16個國이다.

PCT의 主要한 目的是 대체로 두 가지點을 들 수 있다.

① 現在 大部分의 海外에 대한 出願은 파리條

約의 優先權條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出願人이 外國에 出願하려면 對象外國의 言語로 明細書를 翻譯함은 물론이며, 對象國의 特許制度에 맞춰서 明細書를 作成하여야 하고, 아울러 對象國의 代理人(변리사)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限定된 期日內에 優先權을 主張하는 일과 出願에 所要되는 經費가 過重한 까닭에 出願人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PCT는 이러한 出願人の 外國出願의 負擔을 덜어 주기 위한 方法으로 1回의 出願으로 出願인이 指定하는 複數國에 優先權을 主張하지 않더라도 出願이 可能하게 된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各國의 特許

機關에 直接 別途로 出願하던 것에 비하면 出願人の 負擔이大幅 輕減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出願人が 指定한 各國에 대한 明細書의 번역도 原則적으로 出願日로부터 20個月以内에 提出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餘裕가 있다.

② 現在까지의 파리條約ルート에서는 各國의 特許廳이 同一한 發明에 대해서 重複으로 新規性에 대한 調査를 하였으므로 貴重한 勞力과 時間이 消費되었으며, 특히 開發途上國의 特許廳에서는 審査資料나 能力의 未洽으로 不實한 特許가 察定되기 쉬웠으나, PCT에서는 PCT에서 指定한 나라의 特許廳 및 IIB(最小限 審査文獻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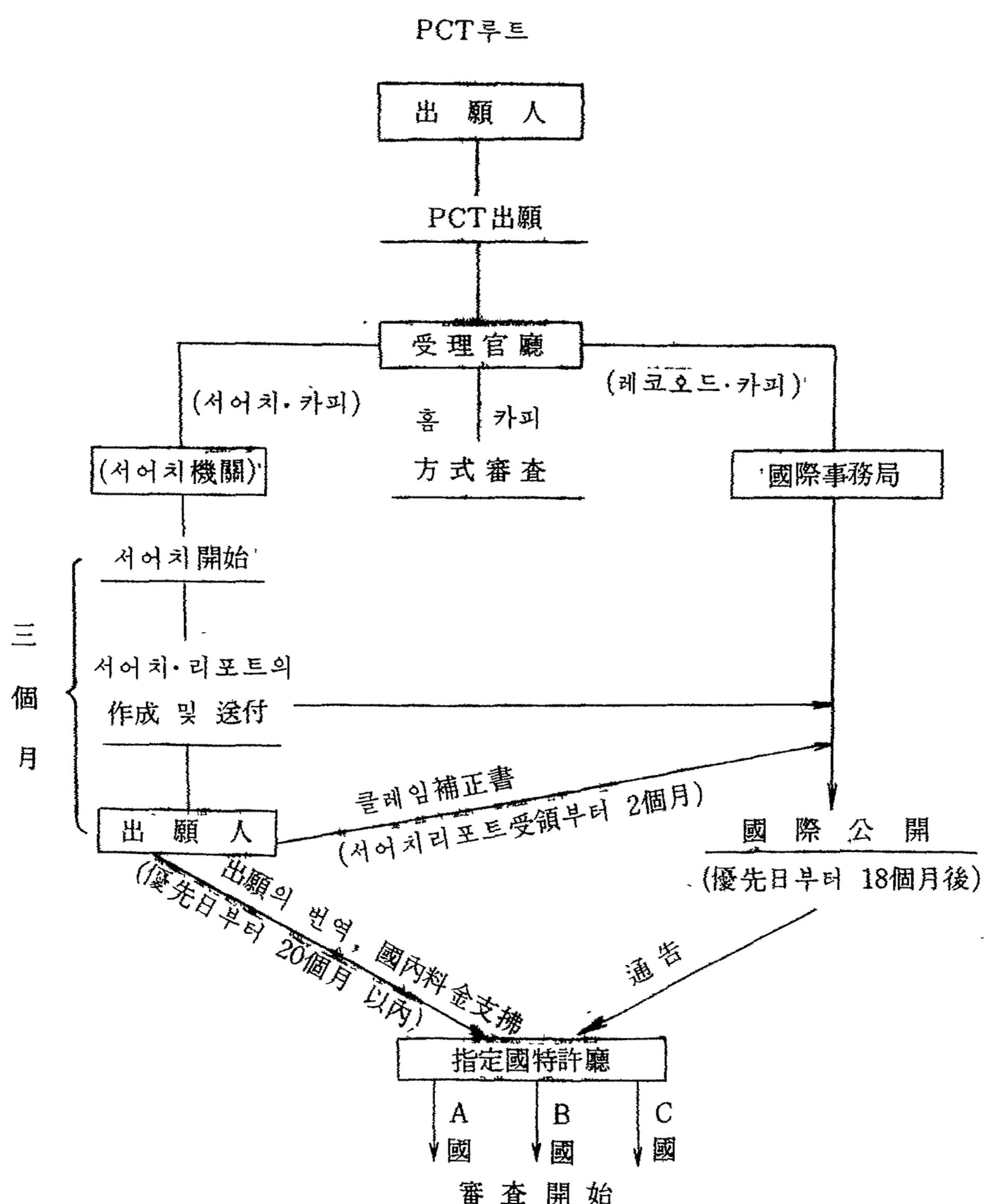


그림 1.

蓄積과 審查能力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나라 [美國, 日本, 西獨, 英國, 소련 등]와 國際調查機關인 IIB)에서 만든 國際서치리포트(그 出願된 特許와 관련한 先行特許나 技術資料의 引用文獻을 열거한 것)를 提出하게 함으로써, 特許性이 없는 부질없는 出願을 中止시킬 수 있는 利點이 있어 勞力과 時間의 節約을 가져올 수 있으며, 先進 여러 나라에서의 審查滯貨를 救濟하는데 크게 期待될 뿐만 아니라, 發展途上國에 있어서는 審查資料나 審查能力의 不足으로 인한 不實特許의 發生을 防止할 수 있는 有利한 面을 들 수 있다.

特許制度의 國際化에 있어서 終局의 目標는 한번의 出願으로 世界 어느 나라에서도 認定되는 世界特許 (Universal Patent)를 取得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한 나라에서 發給되는 旅券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자없이 通用될 수 있는 萬國パス포트와 같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이러한 理想에 接近하기에는 여러 制約가 가로놓여 있어 不可能하다. 따라서 이에 接近하려는 不斷한 勞力의 結實로 나타난 것이 바로 PCT다. 아직까지도 PCT는 파리條約의 優先權을 改良하여 國際出願한데 不過하여, 各國의 特許法에 의해 支配되고, 屬地主義의 原則은 벗어날 수 없으나, 加盟國의 數가 늘어나면 特許出願에 있어서 國際化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매우 크다고 본다. PCT의 루트나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은 省略하는 대신 PCT 루트의 흐름을 그림 1에 表示하였다.

2.4 歐洲特許條約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1959年 以來 EEC 6個國의 專門家에 의해 作成되어 1962年 11月에 假草案이 發表된지 15년이 經過한 1977年 10月 7일에 發效되었고, 같은 해 11月 1일에 유럽特許廳 (European Patent Office, EPO)이 開設되어 이듬해인 78年 6月 1日부터 出願業務가 開始되었다. 우연히도 PCT와 거의 同時に 發效되어 PCT와 아울러 特許의 國際化에 새로운 章이 펼쳐진 셈이다.

EPO는 西獨의 뮌헨에 本部를 두고 네덜란드

의 해이그에 支廳이 設置되었다. 해이그의 支廳에서는 特許出願의 方式審查를 거쳐 調查를 하는데, 出願自體와 調查報告를 公開할 때의 公用語는 英語, 佛語, 獨語로 된다.

EPO는 受理課, 調查部, 審查部, 異議部, 法律部, 審判部, 抗告審判部로 組織되어 있다.

EPO의 業務概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特許出願은 單一出願 및 單一審查로, 特許가 許與되는데 그 節次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出願書類의 提出은 EPO와 締結國內管署에 提出한다.
- ② 國內管署에 出願된 書類를 해이그에 移送
- ③ 受理課의 審查를 거쳐 出願日을 부여
- ④ 出願, 審查料金의 點檢, 번역文提出有無의 確認
- ⑤ 受理課에서의 方式審查
- ⑥ 調查報告書作成과 그 寫文을 出願人에게 發送
- ⑦ 出願과 調查報告書의 公開
- ⑧ 實體審查
- ⑨ 유럽特許의 許與
- ⑩ 出願明細書의 公表
- ⑪ 異議申請의 接受와 出願人에게 通知
- ⑫ 異議部에서의 再審

한편, 유럽特許는 特許許與日로부터 各指定國의 國內特許가 된다.

이 EPO의 特色을 要約하면, ① EEC 6個國은 共通의 유럽特許法를 制定하여, 하나의 特許廳과 特許裁判所를 設置하고, ② 유럽특허법은 各國의 特許法 폐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것들과의 併存을 뜻한다. ③ 파리條約의 規定과 상치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④ 特許附與手續에서는 早期公開制와 審查請求制를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이른 바 廣域特許制, 早期公開制, 審查請求制 등 今後 特許制度의 一大潮流를 이루는 諸制度에 앞장선 것으로 크게 評價된다.

2.5 世界特許情報센터 (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 INPADOC)

1972年 WIPO의 PCT委員會에서 美國을 비롯한 主要 9個國代表가 會合하여 世界特許情報

센터를 設立할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처음에는 오스트리아政府, IIB(國際特許調查所), 英國의 더웬트社(Derwent)가 物望에 올랐으나, 오스트리아政府가 맡기로 結論을 보아, 現在 오스트리아의 首都인 비엔에 1973年에 設立되었다.

INPADOC의 機能은 各國(現在는 44個國)에서 發生되는 特許情報を 蒐集하여 世界의 特許情報化 시켜 다시 各國의 特許廳이나 그 나라가 指定하는 特許情報센터에 보내서 特許情報서비스하도록 되어 있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日本特許廳이 指定한 日本特許情報센터(JAPATIC)에서는 日本에서 發生된 特許 및 實用新案情報 를 INPADOC의 樣式에 맞춰서, 特許 및 實用新案의 電子計算機用 磁氣테이프로 편집하여 INPADOC에 보내고, INPADOC에서는 世界各國에서 들어온 特許情報を 國際特許分類에 맞추어 再編集하여 日本의 JAPATIC에 보내면 이것으로 JAPATIC에서는 日本內의 利用者에게 情報서비스를 하고 있다.

INPADOC의 設立目的은 世界的인 特許情報의 流通과 新規性 調査의 正確性과 迅速性을 도와 PCT의 圓滑한 運營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1978年부터 우리나라 特許廳에서도 INPADOC의 마이크로피시로 된 特許情報資料를 利用하기 시작하였으며, KORSTIC에서도 INPADOC의 電算用 테이터베이스를 活用하여 特許情報서비스를 開始하고자 目下 交渉中에 있다.

3. 우리나라의 特許現況

3.1 국제기구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그동안 特許에 있어서는 一種의 鎮國政策을 써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經濟도 4次 經濟開發計劃을 成功的으로 推進해 온 結果, 100억불 輸出目標額을 벌써 當初目標年보다 3년이나 앞당겨 이룩하였고 先進諸國의 保護主義 經濟政策과 國際的不況의 繼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은 持續的인 高度成長으로 치닫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事實이다. 또한 우리나라 輸出商品이 세계 어디에서나 去來되고 있다. 이에 따라 工業所有權에

있어서도 언제까지나 鎮國政策으로 國內產業을 保護한다는 생각이 계속될 수는 없다. 따라서 政府에서도 우리나라 特許行政을 과감히 革新할 때 임을 認識하여, 1976年에 特許局을 特許廳으로 升格시킴과 아울러 工業所有權關係의 國際機構에도 積極 參與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드디어 1978年에 WIPO에 加入할 것을 決定하였다. 當局者の 말에 의하면 1979年에는 WIPO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特許制度의 近代化를 위한 检討를 하여 特許法改正을 하고, 이어서 1980年에는 파리條約에 加盟하고 계속 PCT條約에도 加盟할 計劃임을 밝하고 있었다.

3.2 企業에서의 特許對應

이렇듯 우리나라의 特許行政도 1978年 WIPO의 加盟을 계기로 國際化의 물결에 실리게 되었다. 特許에 있어서 權利의 主人은 어디까지나 企業이고 다만 特許廳은 行政上의 뒷바라지를 하는 곳일 뿐이다. 따라서 特許의 主人格인 企業이 이러한 國際화의 뒷전에 물려서 있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國際化 물결에 앞장설 企業이 取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要約해서 結論을 맺고자 한다.

① 國內外 出願에 積極 參與하여야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大企業들의 어느 하나를 지적하더라도, 特許로 해서 成功한例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銀行을 利用하고 政府의 背景을 업고 事業에 成功한例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美國이나 日本 등 先進工業國에서는 일일이 事例를 들 수 없을 만큼 技術革新→特許化→企業化→特許管理의 經路로 成功한 企業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우리 企業들도 世界市場에서 몇몇이 競爭하기 위해서는 위의 先進國企業의 發展過程을 익혀 나가야 한다.

② 特許管理 專擔部署를 設置하여야 한다.

1974年 1月의 韓日工業所有權協定發效를 對備하여 韓國特許協會(1973年 9月設立)가 設立된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위 協會의 活動과 特許廳의 努力으로 올해로 協會會員數가 149個處로 늘었고, 特許管理專擔部署를 設置한 企業도 百餘個處나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進的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積極的인 자세가 없이는 科學技術의
회기적인 發展, 企業經營의 現代化 등의 先進國
指向이 어려울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 技術情報管理의 理論과

實際, 1978

2. Frost & Sullivan : DBMS Market, 1977
3. James Martin : Principles of Data Base Management, Prentice-Hall, 1976
4. Joel E. Ross : Information Systems for Modern Management, Prentice-Hall, 1974
5. 小林功武 : データベース序論, 情報科學, vol. 14, no. 1, pp. 10~30, 1978. 1

<p. 6의 계속> ——————

다.

그러나 몇 企業을 除外하고는 名實相附한 特許管理專擔部署의 活動을 展開하고 있지 못하고有名無實한 상태다. 물론 初創期라서 그렇기도 하겠으나 앞으로 内容을 더 한층 充實히 하여 展開할 것을 期待하여 마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의 經濟事情이 先進國隊列에 接近하고자 하는 이때에, 企業의 特許活動도 國際化의 물결에 앞장서서 노저어 나가야 할 때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急變해 나가는 特許의 國際活動을 예의 注視해서 우리의 進路를 올바르게 設定할 時期라고 생각한다.